###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0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 백승아 · 박해철 · 서미화

민병덕 • 박지혜 • 김 윤

한창민 · 용혜인 · 조계원

이기헌ㆍ허 영ㆍ김성환

정혜경 · 황정아 · 민형배

의원(15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 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 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 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 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조차 불가능한 상태임.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50만 현장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주요내용

사립학교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교 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제53조제1항제7호 삭제).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80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 9호)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 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選	
擧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	
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와	
地方議會議員選舉外 地方自治	
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	
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	
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	
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	<u>&lt;삭 제&gt;</u>
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私立學校	
<u>教員</u>	
8. • 9.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